

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황주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59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9. 17.

발의자 : 황주홍·김광수·박주현
이찬열·장정숙·조배숙
최도자·유성엽·이양수
윤준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,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모든 조난사고 발생 시 현장으로 이동하여 현장을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육상사고와 달리 해양사고는 이동 거리와 수단 그리고 기상 등의 한계로 현장 이동에 제약이 따르고, 수난구호활동에 동원된 구조세력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.

이에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현실화하고, 구조본부장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 미이행 시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조난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해상재난현장에서 일사불란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 고자 함(안 제1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).

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 제목 “(현장지휘)”를 “(현장지휘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활동을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수난구호협력기관에 대하여 시정·보완요구 및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징계 등의 요청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⑦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<u>현장지휘</u>) ① ~ ⑤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17조(<u>현장지휘 등</u>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⑥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활동을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수난구호협력기관에 대하여 시정·보완요구 및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징계 등의 요청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⑦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수난구호활동 지휘 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